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 3. 2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승 관**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마포구청장
- 나. 제 출 일 : 2010. 02. 18
- 다. 위원회회부 : 2010. 02. 22
- 라.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

2. 개정이유

창녕 ‘화왕산 억새꽃 축제’ 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 주관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 포함)을 구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사고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실무위원회에서 “구 주관 축제·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안 제9조제5항)
- 나. 제5항 단서에 따른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안 제9조제6항)
- 다.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며, 제명 등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문구를 보완·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개정문안 : 따로붙임
 -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9. 12. 24 ~ 2010. 1. 23) 결과, 의견제출 없음

5. 조례안 검토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 축제나 행사시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였으나 축제나 행사시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하였고, 「공연법」에서 공연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주관 지역축제·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 및 공연법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제명 등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문구를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공연법

제11조 (재해예방조치) ①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9.27>

②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9.27>

③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시행령

제9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등록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적용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2.7.30]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

(제정)2005. 6.15 조례 제 596호
(일부개정) 2007.01.02 조례 제 641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에 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

제3조(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2. 구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구 안전문화운동의 추진에 관한 계획안의 심의
4. 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이하 “재난 관리책임기관”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5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마포소방서장
3. 마포경찰서장
4. 육군제5750부대장
5.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교육장
6. 서울특별시서부수도사업소장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의 장

- 8. 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의 대표자 중에서 위원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총괄관리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재난관리팀장이 된다.

③위원회 및 조례 제9조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또는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당해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관련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위원회의 회의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위원으로 지명된 재난총괄관리담당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팀 업무담당자이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전문지식의 활용)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계획 등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업무의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요청)위원회 등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등)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회의록의 비치)위원회 등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6조(위임규정)이 규정 외에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

제17조(설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재난발생의 방지와 피해의 예방·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2.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3. 재난사고 원인의 조사
4. 사상자의 관리 및 피해상황의 조사

5. 이재민의 수용·구호 및 피해지역·시설의 응급복구
6. 재난사항의 신고접수·전파·보고 등 재난상황의 관리
7. 피해보상의 조정·중재 등
8.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9.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 실시
10.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
11.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반 체계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제19조(구성 등) ①대책본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상황실장을 둔다.(개정 '07.1.2)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하는 국·소의 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상황실장은 수습주무부서의 과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업무를 총괄한다.

②재난총괄부서에서는 재난의 총괄·조정·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③대책본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둔다. 이 경우 실무반 근무자는 당해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공무원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④제1항 제4호의 재난의 종류별 수습주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운영) ①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운영하고, 당해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도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제21조(설치장소) ①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종합상황실에 설치하되 필요할 경우 이 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재난사고시 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재난 수습책임이 있는 부서 및 기관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①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운영, 안전대책의 수립 및 소관 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의 구성원은 당해 재난 및 수습관련 주무부서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지원 기관의 책임관 등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23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①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재난수습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년1회 이상 수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9조 제3항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기관 또는 근로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제24조(인력·물자 등 동원체계의 구축)①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으로부터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 또는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①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공보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모니터요원 및 공보전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규칙)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자문단

제27조(설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기능)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29조(구성) ①자문단은 단장 1인 및 부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하는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30조(임기)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31조(단장 및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

②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3조(협조요청)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점검 및 상담)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간사)①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총괄관리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간사는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36조(수당)구청장은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현장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운영규정)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 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 행위로 본다.

부 칙('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9호 생략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행정관리국장” 을 “건설교통국장” 으로 한다.

11호 내지 44호 생략